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나44950(본소), 2022나4496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 유류분반환청구]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나44950(본소), 2022나44967(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0가단5185769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김지훈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기탁

변론 종결2022. 12. 13.

판결 선고2023. 1. 17.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0가단5185769(본소),
2021가단5224944(반소) 판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본소로 인한 항소비용1) 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20. 3. 28.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000분의 16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2019. 8.경 망인으로부터 남양주토지를 받았고,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사인증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인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망인은 2020. 2. 20.경 원고와 대화할 당시 치매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와 망인 사이의 대화 내용만으로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증여자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민법 제555조에 의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2022. 5. 1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사인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나. 판단

1) 사인증여계약 체결 여부 가) 사인증여는 낙성·불요식 계약으로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고, 사인증여와 증여의 차이는 생전의 이행을 배제하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은 2020. 2. 20.경 원고에게 자신의 사망 후 재산의 분배를 논의하며(망인은 원고에게 유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시하고 있었다) 아들인 원고에게 집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망인과 원고 모두 그 집이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므로, 비록 망인이 명시적으로 사인증여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의사표시는 사인증여로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2020. 2. 2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인증여계약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 유무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능력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본소), 2009다53109(반소)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제1심법원의 L기관장에 대한 감정축탁결과, L기관장에 대한 2021. 6. 30.자, 2021. 12. 13.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위 사인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2020. 2. 20. 전후로 임상적으로 양호한 양상을 보였고 그때까지 망인은 의학적으로 섬망으로 진단받지 아니한 점, 망인은 초등학교 교육까지만 받았고 72세의 고령인 점, M단체 소속 감정원은 감정기록으로 제출된 녹취서 및 녹취파일2)에서 보이는 망인의 의식상태, 언어적 능력, 소통 양상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2020. 2. 20. 당시 인지능력이 감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6, 7, 26,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에게 한 사인증여 행위의 법률적 의미나 결과에 대하여 이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사인증여계약 해제 여부 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사인증여는 민법 제555조에 의하여 증여자의 사후 상속인들이 이를 해제할 수 있고, 또한,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일 뿐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755 판결 참조), 피고들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2022. 5. 17.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2022. 5. 18. 송달되어 위 사인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판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에 의하면 사인증여계약에 민법 제555조보다 우선적으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사인증여계약도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을 뿐, 이미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 그 상속인들의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위 판례는 서면에 의한 사인증여계약의 철회 가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사인증여계약이 유증과 그 기능이 다르지 않으므로 유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56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10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자가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설시한 것일 뿐 증여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의 해제를 다른 것이 아니어서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1/3지분에 관한 해제권이 상속되었는데,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라 해제권자가 수인인 경우 해제권자 전원이 해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원고를 제외한 피고들의 해제 의사표시만으로 사인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사인증여 받은 자이면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므로, 원고가 가지고 있던 망인에 대한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는 상속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해제 의사표시는 나머지 지분 2/3지분에 관하여 적법하다(원고가 민법 제187조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등기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상속분만큼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므로,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사인증여 계약이 이행되었으므로 피고들의 해제는 원고의 1/3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인증여계약 중 2/3지분 부분은 피고들의 의사표시로 해제되었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창현

판사강영훈

판사노태헌

별지

1)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는 본소청구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소송의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이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비적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4. 6.자 2017마6406 결정 참조).

2) 2020. 2. 19. 20:40, 2020. 2. 20. 15:30, 2020. 2. 21. 19:20, 2020. 2. 21. 20:10 각 녹취한 것.